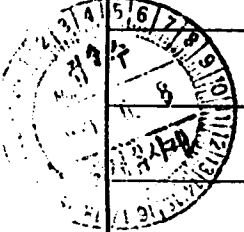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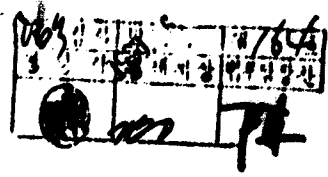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차30400-226 (전화: 777-9151)	시행상 특별회급	
보존기간	영구·출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0. 6.		
보조 기관	교통국장	전길	업 조 기 관
	주차계획담당관	이은	
	주차계장	이수근	
기안책임자	신 일 근	법무담당관	은수2과장
		회계심사계장	이화문계장
		지출계장	이
		문 서 용 제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명 의	시 장
제 목	불법주차 견인대행 의망업자 모집 공고		
(제1안)	내부결재		
<p>1. 불법주차 견인전문대행업자 등록 방안 (방침. 제1410호, 90.6.</p> <p>7)에 따라 불법주차 견인대행 의망업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p> <p>가. 공고일시 : '90. 6. 11</p> <p>나. 공고방법 : 신문공고(2개일간지. - 조간1, 석간1)</p> <p>다. 소요예산 : 일금 이백육십사만원정(W2,640,000)</p> <p>라. 산출근거 : 4단 x 10cm x 30,000원 x 1.1(부가세</p>			
포함)		200	
<p>마. 예산과목 : 주차장시설관리, 주차장시설관리, 주차장관리.</p>			

영구·출영구
 10.5.3.1.
 1990. 6. 8.



수용비 및 수수료.	
바. 지출방법 : 청구에 의거 지급	
첨부	공고(안) 1부. 끝.
(계2안)	
수신	공보관 주차계획담당관
제목	신문공고 의뢰
1. 불법주차건인 전문대형업자 등록방안 (방침 제1410호, 90.6.7)에 따라 불법주차 건인대형 의망업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시 : '90. 6. 11	
나. 공고방법 : 신문공고(일간지 2개사, 조간1, 심간1)	
다. 게재의망규격 : 4단 x 10cm	
라. 공고문 : 별첨.	
첨부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9 호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 희망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대행 희망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990 년 8 월 11 일

서울특별시청

1. 사업의 종류 : 불법주차차량 견인의 대행업
2. 사업의 내용
 -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차로 적발한 차량을 견인장중관리소까지 견인하는 업무의 대행
3. 신청자격
 -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4 규정에 의거, 특수자동차(레카차) 운송사업등록 자격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 단 견인차량을 5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중 1대이상은 2.5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확보하여야 함
4. 등록절차
 - 견인대행업을 신청하여 구역별 업체로 선정된후, 특수자동차운송사업등록 내인가 및 본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행업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모집업체의 수 및 차량대수 - 26개업체 130대 (업체별 5대)
 - 신청방법 - 신청자가 견인활동을 희망하는 구역을 자율검정하여 구역별로 신청하되, 차고지는 희망 구역내에 확보되어야 함.

○ 구역별 모집계획

구역번호	계	1	2	3	4	5
담당지역	12구역	종로. 중구	성동. 중랑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업체수	26업체	4	2	2	2	2

6	7	8	9	10	11	12
용산.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안양천서부)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안양천동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2	2	2	2	2	2

* 구역은 주후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구역당 대행의망업자 초과시 선정방법 - 구역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정업자는 별도 지정하여 1990.6.26 시청 게시판에 공고

6. 견인대행수수료

○ 서울특별시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견인용역비의 범위내에서 견인집중관리소의 운영비등의 중당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후 서울특별시가 정한 금액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90.6.12 ~ '90.6.25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실)

8. 구비서류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4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정관 및 법인 통기부통본(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 신청서
- 각 서
- 필요한 경우 기타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9. 기 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90. 6. 15 (금)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국 회의실(구 대한체육회 10층)
- 내 용 : 견인대행업에 대한 사업 및 세부모집기준 안내

○ 본 공고에 의하여 등록되는 견인대행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등 자격요건이 향후 관계 법규(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로 규정되는 자격요건등과 다를 경우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실(777-9151~2)로 문의바람.

각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예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1. 모집공고, 사업설명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를 것이며
2. 추후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견인활동구역의 변경이나 다른 업체의 신규증설.증차.감차등이 있을 경우 이의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1990.

회사명 :

주 소 :

성 명 : (인)